

# 감시인력 부족 등 허점 파고든 상품권 '깡'

### 대리구매자 통한 230억대 상품권 불법 매집·환전 8000여 가맹점 감독 전담 인력, 한자릿수에 불과 불법 유통 가담해도 가맹 취소·과태료 처분 뿐

광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가 대리 구매인을 동원, 은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 전모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어긋난 불법 환전이 수년간 이뤄졌던 배경으로 허술한 관리·감독과 형사 처벌 미비가 꼽히고 있다. 감독기관은 뒤늦게 제발 방지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27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은누리상품권을 불법 매집해 거액의 환전 차익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역 전통시장 모 상인회 전 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정상 실거래가 아닌 대리구매자를 통해 불법으로 모든 상품권을 환전하는 이른바 ‘깡’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 2년여 간 대리 구매자를 통해 불법 매집한 상품권 규모만 230억 원(액면가 기준)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상품권 구입 시점 당시 적용 받는 할인이 경제 상황·유통량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전체 불법 매집 규모를 고려하면 이들이 가로챈 환전 차익은 십억 대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시장 상인회가 입점 상인으로부터 거둬들인 은누리상품권에 대한 금용기관이 별 의심 없이 일괄 환전해준다는 제도적 맹점을 노린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가맹점이 환전할 경우에는 일련 번호를 통해 상품권 구매자의 실거래 여부 등을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대행 업무를 맡은 상인회가 일괄 환전을 하면 사후 확인·검증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가맹점 단위 환전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도입한 환전 대행 업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것이다.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은누리상품권 거래 질서에 대한 관리·감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도맡는다. 그러나 공단 내 불법 매집·환전 관련 감독 전담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올해 코로나19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할인을 인상을 틈타, 전국 각지에서 상품권 ‘깡’이 성행하자 6명에서 급히 인력을 충원한 것이다.

전국 상품권 가맹점이 8000여 곳, 상품권 환전 대행 가맹점 416곳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리·감독 부실이 불가피하다.

공단은 뒤늦게 제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은누리상품권 판매처인 광주 동구의 금융기관 앞에서 현금과 은누리상품권으로 보이는 종이 다발(빨간 원 안)을 교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우선, 환전 대행을 맡은 상인회 가맹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한다. 그동안 상인회는 개별 가맹점으로부터 회수한 상품권과 금융기관 환전 내역 등을 수기(手記)로 작성해왔다.

공단은 최근 상품권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스캐너를 보급, 전산시스템상 입력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하고 있다. 시스템 운용 상 예외사항 등을 청취, 바코드 일괄 인식이 가능한 설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전국 6개 권역별 본부(서울중앙·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호남·경기인천·대전충청)에 부정 유통 감시 권한을 부여,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비한 형사 처벌 규정도 상품권 불법 유통이 만연한 배경으로 꼽힌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 또는 ‘가맹 취소’ 행정처분만 할 수 있다. 심수억대 환전 차이 규모와 비교해 ‘술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이 형법상 ‘사기’ 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수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단 측은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할 방침이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령에 명시된 실행 조항을 둔다면, 가맹점들의 도덕적 해이를 엄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 상인회와 일부 가맹점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엄단하겠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무적 준비와 함께 제도적 보완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경기자

## 바다에 폐유 쏟아 버리고 도주...기름 DNA검사로 잡아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 수백ℓ를 전남 해상에 버리고 도주한 기관사가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7일 해상에 폐유를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200t급 선박의 기관사 A(6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17분 광양항 해상에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 880ℓ를 무단 배출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상에 몰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광양항 인근 해상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해경은 방제정과 흡착재 등을 사용해 기름부터 제거했으며 CCTV 등을 통해 광양항 입출항 선박 48척을 확인했다.

또 폐유 DNA 분석을 통해 용의선박을 특정할 땐 A씨를 붙잡았다.

여수해경은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며 “해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 노점 상인에 행패 뒤 보복범죄 50대 주폭 실행

시장 노점 상인 일가족을 괴롭히고 보복성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과 2월 1일 전남 지역 한 시장 내 식당 주인 B(38)씨의 빵을 때리고 막말·욕설로 모욕하는가 하면, 식당에 놓여진 수산물 바구니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반박한 혐의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께 B씨의 어머니인 C(67·여)씨의 노점상에서 1시간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7월 31일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와 그의 딸에게 보복성 폭력을 행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잘못된 성행을 돌아보지않고 피해자들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그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고·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입혔다. 형사사범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 중고업서 비키니 수영복 판매자에 음란문자 30대 집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비키니 수영복 판매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8시 6분께 광주 지역 자신의 직장에서 유명 중고 물품 직거래 앱 메신저로 비키니 수영복 판매자인 20대 여성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이거 남자가 사도 되나요. 제가 입을 거예요. 이거 입고 자위하면 좋거든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A씨는 B씨의 사진을 보고 자위행위를 끝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3차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았던 A씨가 건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인터넷을 이용,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재범 근절을 다짐하며 스스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못생겨서” 아내에게 족발 투척...공소기각, 왜?

### 처형 집까지 찾아가 “죽여버려” 협박까지

이혼을 원하는 아내 얼굴에 족발을 던지고 침을 뱉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는 조모(40)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7일 모두 기각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18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아내와 이혼에 대해 대화하던 중 “XX, 더럽게 쳐 못생긴 X, 다른 남편이면 쳐 맞아 죽였을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먹고 있던 족발과 막국수를 아내 얼굴에 던졌다.

그는 또 같은달 24일 오후 5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딸 양육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딸을 데리고 자리를 떠나려하자 아내 어깨에 침을 뱉고 밀치기도 했다.

조씨는 이튿날에는 아내가 머물던 처형 집에 찾아가 “다 죽여버려겠다”, “조만간 알게 해줄테니 하루 하루 긴장하고 살라”는 등의 협박을 했고, 그 다음날에는 양육과 이혼 문제로 딸다툼을 하다가 부인에게 “XXX야, XXX, 너 죽여야겠다”고 말하며 벽살을 잡고 어깨와 팔을 잡아

당기는 등 방식으로 폭행했다.

이 같은 행각에도 조씨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형법상 폭행과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아내가 이 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지난달 19일 피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